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2023년 6월 30일”을 “202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4 중 “2023년 6월 30일”을 “202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공공시설건축과) ① 건설 청 시설사업국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 17조의3에 따라 <u>2023년 6월 30</u> <u>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시설건축과를 둔다. ② ~ ⑤ (생 략)	제18조(공공시설건축과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6월 30</u> <u>일</u>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5